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16 선고 2016가단7193 판결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484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16 선고 2016가단7193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 선고 2018.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소외 C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 및 교통시설물 등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9.경부터 원고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① 2015. 10. 21.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의 전기공사를 24억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C의 직원인 E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15. 11. 2. 안양시 동안구 F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2신축공사'라 한다)의 전기공사를 1,122,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고 피고를 거쳐 C의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G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신축공사는 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인데, 피고가 E과 공모하여 실제 C이 위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계약보증금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피고가 E과 공모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선관주의 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C의 E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지 E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의 직원으로 선관주의나 충실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신축계약의 전기공사와 관련한 계약보증금을 C측에 지급하고 실제 위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정에 피고가 E이나 G와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떠한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 의무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은경